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자료제출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
국외이전 실태점검 〉

■ 김승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854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실태 점검	3
2. 자료 제출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김승원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2025. 11. 3.
3. 회 부 일: 2025. 11.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조치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등 법 위반 사항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의무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최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그 실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의무이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

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제63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실태 점검

-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태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및 제6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① 보호위원회는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u><신 설></u>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① ----- -----다음-----해당하는 사전 실태점검을 할-----.
<u><신 설></u>	1.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u><신 설></u>	2.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

현행	개정안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제66조(결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u>정보의 국외 이전 실태 점검</u> ② -----제1항 각 호에-----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6조(결과의 공표) ① ----- -----제63조의2 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제64조에--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사전 실태점검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후 처벌하는 사후 규제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에 도입되었음.

보호위원회는 실태점검 실시 결과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시정방안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의 수락 여부¹⁾를 보호위원회에 통지하고, 그 이

행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함.

- 최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그 실태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사전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기 전에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사전 예방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같이 국외 이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사전 실태점검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상으로도 실태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같이 국외 이전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따른 위험성을 강조하는 의미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행법도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²⁾, 보호위원회가 점검

1) 시정권고를 수락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고, 권고를 수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음.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제63조의2제1항 및 제6항³⁾에 따라 국외 이전과 관련한 실태점검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제로 점검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음⁴⁾.

□ 또한, 개정안은 실태점검 실시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대외적으로 알림으로써 타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경각심을 갖게 하고, 자율적인 사전 점검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있을 것이므로, 실태점검 결과 공표 필요성이 인정됨.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 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 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 나.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① 보호위원회는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제64조제3항에 따른 권고를 말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14.]

- 4) SKT(에이닷) 등 AI 응용서비스 사전 실태점검(2024. 6. 12.), 답시크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2025. 4. 23.) 실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다만, 현행법상으로도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게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현행 공표 규정으로도 개정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 제63조의2 및 제66조⁵⁾에 따르면, 실태점검 실시결과에 따른 시정권고를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락하여 시정조치명령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호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국외 이전 사전 실태점검이 가능하므로 별도 규정의 실익은 적다는 의견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또한 현행법에 의해서도 필요시 사전 실태점검이 가능하고, 국외 이전에 관한 사전 실태점검 규제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국내 기업 위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 (기타 사항) 한편, 법안의 개정 취지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증가에 따라 그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실태점검을 할 수

5)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제64조제3항에 따른 권고를 말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6조(결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국외 이전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자료제출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

-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자료가 법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호위원회가 이행기한을 정해 자료 제출을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간 경과 1일당 1일 평균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63조의3(이행강제금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서류 등의 자료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자료가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물품 또는 서류 등의 자료의 제출을 다시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6)에 따른다.

현행	개정안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현행법은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⁷⁾.

6)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요건
3. 부과 금액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5.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7)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검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 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등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적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관련 조사 및 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⁸⁾.

이에 개정안은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제출 요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법상 자료요구 불이행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는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과태료를 부담하고 자료제출은 하지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구조이므로⁹⁾, 자료제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임. 반면,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이행강제력이 크고, 개정안에 따르면 일(日)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에게는 그에 비례해서 부담이 커지는 구조임.

□ 다만, 이행강제금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25.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6.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개보위 "쿠팡, 왜곡된 공지 내려라...반복된 조사방해 행위, 가중 처분", 뉴스1, 2026.1.14. <https://www.news1.kr/politics/pm-bai-comm/6039434>

9) 자료제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도 있으나, 현재 법령상 1회 위반시 300만원, 2회 위반시 600만원, 3회 위반시 1,0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도임.

- 첫째, 이행강제금은 행정청의 명령에 따른 시정의무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반복적인 금전적 제재를 통하여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개정안은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자료제출 요구 미이행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조사 단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전반에 대해서 그 이행을 강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 현행법¹⁰⁾상 자료제출 요구는 ①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② 법 위반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③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에 가능함.

참고로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조치명령 등을 불이행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는 않음.

10)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우 단기간 내 피해가 확산될 수 있어 그 파급력과 영향력이 크고, 적시 조사를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행강제금 도입의 실익은 인정된다고 보이나,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자료제출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및 법 위반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은 단순 혐의 단계에서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대기업에는 과도한 제재, 중소기업에는 경영상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는 자료제출 거부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자료 제출 강제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임.

자료제출 불이행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례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해당 규정 신설), 「전기통신사업법」(2021. 10. 10. 해당 규정 신설), 「국세기본법」(2025. 3. 14. 해당 규정 신설) 등이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6. 3. 12. 본회의 의결)에도 자료제출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가 반영되어 있음.

<유사입법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6조(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이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회의의 결정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 21.>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1조제2항 각 호의 조사대상자가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료나 물건이 제50조제1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1., 2025. 10. 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루당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재제출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사실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

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⑥ 이행강제금의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7(이행강제금)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제85조의8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의 장부등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통지하는 날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평균수입금액이 없거나 평균수입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장부등의 제출이행을 위한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사유 또는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및 감면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둘째,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도 중복 부과가 가능함. 해당 과태료 부분은 삭제하거나 중복 부과를 제한하는 등의 보완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유사입법례 중 「국세기본법」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국세 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 밖에,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징수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행정력 부족으로 이행강제금 징수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할 경우 실질적인 징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 참고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료제출 기한을 명시하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¹¹⁾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임.

문 의 처
02)6788-5104

11) 2025. 8. 1.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923호